

## 사적 제213호 우정총국 (史蹟 第213號 郵征總局)

### 우정총국(郵征總局)

#### 정충량

현재(現在) 서울 시내(市內) 견지동(堅志洞)에 소재(所在)하고 있는 우정총국(郵征總局)의 전후경위(前後經緯)와 당시에 실시(實施)키로한 직제(職制) 및 우정규칙(郵征規則)등을 중심(中心)으로 기술(記述)해 보기로 한다.

우정총국(郵征總局)은 고종(高宗) 21年(1884, 갑신(甲申)) 3月 27日에 국왕(國王)의 속명으로 설립(設立)되었으며 이는 홍영식(洪英植) 중심(中心)의 개화파(開化派)들의 꾸준한 노력(努力)의 결과(結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선진국(先進國)에 비해서는 뒤졌지만 가까운 청국(淸國)에서도 아직 국립우편(國立郵便)이 시작되지도 않은 때이었으니 확실히 선진적(先進的)인 조치(措置)였다. 이때에 고종(高宗)은 동부승지 윤정구(尹定求)에게 하교(下敎)하기를 병조참판(兵曹參判) 홍영식(洪英植)을 우정총변(郵征總辦)으로 임명(任命)하여 우정총국(郵征總局)을 관리(辦理)케하고 연해각항구(沿海各港口)에 왕래(往來)하는 서신(書信)을 관판(管辦)할뿐 아니라 내지우편(內地郵便)도 점차(漸次) 확장하여 공사(公私)의 이익(利益)을 거두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에따라 홍영식(洪英植)은 익(翌) 8日에 우정국총판(郵征總辦)으로 임명(任命)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 사실(事實)을 주목(注目)해야 할줄로 믿는다. 우정총국(郵征總局)의 개설(開設)이 마치 갑신년(甲申年) 10月 1日이나 10月 17日로 인식(認識)하기 쉬우나 10月 1日은 우정총국(郵征總局) 개국연회(開局宴會)를 계기(契機)로 갑신정변(甲申政變)이 일어난 날임에 불과(不過)하고 우정총국(郵征總局)의 설치(設置)는 위에서 기술한바 같이 3月 27日에 이루어 졌음을 분명히 인식(認識)해야 한다. 또한 사실(事實)은 이때 우정사업(郵征事業) 개설의 第一목적(目的)이 국내우편(國內郵便)보다도 국제우편(國際郵便)에 있었음을 간취(看取)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때에 설립(設立)되었던 우정총국(郵征總局)은 갑신정변(甲申政變)의 봉기처(蜂起處)란 점만은 짐작할 수 있어도 타관청(他官廳)과의 관계(關係)와 총변외의 다른 관원(官員)의 임명(任命)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 까닭은 우정총국(郵征總局)이 이때 체모(體貌)를 갖추어 창설(創設)되었다기 보다는 홍영식(洪英植)으로 하여금 앞으로 우정총국(郵征總局)의 개설(開設)을 허용(許容)한 조치(措置)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와같은 테두리의 설정(設定)과 더불어 다시 약 1개월(個月)을 지나는 동안 우정업무(郵征業務) 직접종사(直接從事)할 외국인(外國人)의 고빙(雇聘)과 연안(沿岸)에서 우체물(郵遞物) 운송(運送)할 선박(船舶)까지도 배려(配慮)한 것 같다. 동년(同年) 윤(閏) 5月 9日(양 7月 1日)에 우정국

총번(郵征局總辦) 홍영식(洪英植) 명의(名儀)로 일본인(日本人) 비직오등(非職五等), 역체관소(驛遞官小) 미보명(尾補明)과 전외무출사(前外務出仕) 궁기언성(宮崎言成)의 2인을 3년기한부(期限附)로 정식(正式) 고용(雇聘)하여 소미(小尾)는 우정총판(郵征總辦)을 장관(長官)으로 받들고 그 명령을 따라 조선국(朝鮮國)의 우정사무(郵征事務)를 수행(遂行)하며 궁기(宮崎)는 장관(長官) 및 소미(小尾)의 명령(命令)을 좇아 우정사업(郵征事業)에 관한 영어(英語)로 된 각종조약(各種條約)을 번역(翻譯)하는 일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외국인(外國人) 전문가(專門家)의 고용(雇聘)은 개국준비(開國準備)를 한층 본격화(本格化) 시켰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하여 8월 21日에는 이상만(李像萬) 전락집(全樂集) 안종수(安宗洙) 박영호(朴泳好) 심상기(沈相耆) 서재창(徐載昌) 홍병후(洪昺厚) 서광수(徐光瀾) 조한상(趙漢相) 이상재(李商在) 신낙균(申洛均) 남궁억(南宮憶) 조창교(趙昌教) 안옥상(安昱相) 등 14名을 그리고 9월 3日에는 성익영(成翊泳)을 우정총국(郵征總局) 사사(司事)로 임명(任命)하였다. 상기중(上記中) 월남이상재(月南李商在)와 기정(起亭) 안종수(安宗洙)는 앞서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에 수행(隨行)한 인사(人事)로 이상재(李商在)는 미구(未久)에 초대(初代) 인천(仁川)우정분국장(郵征分局長)의 임무(任務)를 맡았고 또 그는 남궁억(南宮憶)과 더불어 한말(韓末)의 정계(政界) 언론계(言論界) 및 종교계(宗教界)에 커다란 족적(足跡)을 남긴 인물(人物)이며 안종수(安宗洙)는 우리나라에서 최초(最初)의 근대적(近代的)인 농업기술서(農業技術書)라 할 수 있는 농정신편(農政新編)을 역편(譯編)한 사람이다. 이외 신낙균(申洛均)은 영어(英語)에 능통(能通)하여 우정총국(郵征總局) 개설연(開設宴)에서 통역(通譯)으로 참석(參席)하였고 안옥상(安昱相)은 영선사(營繕司) 김윤식(金允植)을 따라 천진(天津)에 유학(留學)하여 제도학(製圖學)을 학습(學習)한 당대(當代)의 신설지식인(新說知識人)이었다. 드디어 동년(同年) 9월 1日에는 업무개시(業務開始)의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각종규칙(各種規則)과 장정(章程)을 상진(上奏)하여 재가(裁可)를 얻었다. 즉 우정총국직제장정통사무장정(郵征總局職制章程同事務章程) 대조선국우정규칙(大朝鮮國郵征規則) 경성내부정왕복개설법(京城內附征往復開設法) 경성인천간왕복우정규법(京城仁川間往復郵征規法) 등 여러 규칙(規則)과 장정(章程)이 마련되었는데 그 구체적(具體的) 내용(內容)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기술(記述)할 터이다.

이러한 개설준비(開設準備)의 진보(進歩)에 따라 영국(英國) 미국(美國) 일본(日本) 청국(淸國) 및 독일(獨逸) 등 각국공사(各國公事) 및 영사관(領事館)에 알림과 아울러 우정규칙(友情規則) 3種의 규칙(規則)을 보내 주었다. 특(特)히 일본공사(日本公事)에게는 인천거류인(仁川居留人)들에게도 우리의 우정사업(郵征事業)을 존행(尊行)하도록 조치(措置)하라고 통고(通告)하였으며 이 통고(通告)에 접(接)한 각국(各國)의 영사(領事)들은 나같이 사업(事業)개설(開設)에 대하여 축의(祝意)를 표(表)하였다. 예정(豫定)된 개국절차(開局節次)는 제대로 진행(進行)을 보아 다시 한번 10월 1일 부서의 업무개시(業務開始)를 왕(王)에게 다짐하였다.

마침내 동년(同年) 10월 1日을 기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근대신식우체업무(近代新式郵遞業務)는 역사적(歷史的)인 막(幕)을 올렸던 것이다. 1884年 10월 1日 우선 한성(漢城) 인천(仁川)간(間)에 업무를 개시(開始)한 우정총국(郵征總局)은 불과(不過) 10일 만에 갑신정변(甲申政變)을 겪고 동년(同年)21日에 애석(哀惜)하게도 혁파(革罷)의 비운(悲運)을 면(免)치 못하였다. 그러나 10월 1日 이후 실제로 우정업무(郵征業務)의 취급

(取扱)이 있었으며 또한 진기홍씨(陳祺洪氏)가 일부인(日附印)으로 조인(調印)된 3매(枚)의 사용필우표(使用畢郵票)가 전존(傳存)함을 제시(提示)하고 또 늦어도 동월(同月) 19까지는 두 개의 우체행랑(郵遞行廊)이 왕복(往復)된 사실(事實)을 들어서 실지(實地) 업무수행(業務遂行)이 이루어졌음을 충분(充分)히 알 수 있다. 그러나 갑신정변(甲申政變)이 있었던 10월 17일 이전(以前)은 물론(勿論) 그후(後) 18과 19일 하오(下午)까지도 업무(業務)를 수행(遂行)하였고 우정국업무(郵征局業務)가 사실상(事實上) 완전(完全) 폐무(廢務)된 때는 10월 20일 부터임이 분명(分明)하다. 뿐만 아니라 당시(當時)의 우정총국(郵征總局)에서는 이미 경성시내(京城市內) 및 경성(京城) 인천간(仁川間)의 왕복(往復)에만 그치지 않고 멀리 부산(釜山)까지도 익년(翌年) 초정(初正)을 기하여 우편(郵便)을 개설(開設)토록 준비(準備)를 진행중(進行中)에 있었으며 또 10월 14일부터는 인천(仁川)의 일본(日本)영사관(領事館)內에 설치(設置)된 인천(仁川) 일본우편국(日本郵便局)의 업무(業務)를 인수(引受)하려고 착수(着手)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는 홍영식(洪英植) 등 당시의 관계관(關係官)들이 국내우체(國內郵遞)의 실시(實施)에만 그치지 않고 오히려 인천 부산 등 항구(港口) 통한 국제우편(國際郵便)의 조속(早熟)한 실시(實施)를 본격적(本格的)으로 서둘렀으며 나아가 이 땅에 불법(不法)으로 설치된 외국(外國)(일본(日本))의 우편(郵便)을 인수(引受)하도록 조치(措置)한 사업등(事業等)은 우체사업(郵遞事業)에 있어서 국권(國權)의 파립(破立)을 期하였다는 점으로 높게 평가(平價)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국제우편(國際郵便)은 후일(後日) 우체사업(郵遞事業)이 재개(再開)된(1895年) 이후(以後)도 수년간(數年間)에 걸쳐 여러 난관(難關)을 겪고 1900년에야 겨우 그 실시(實施)를 보았고 이땅에 불법(不法)으로 설치(設置)된 일본우편국(日本郵便局)의 존재(存在)는 광무년간(光武年間)에 이르러 우리의 우체사업발전(郵便事業發展)에 크나큰 암적존재(癍的存在)를 화(花)하였지만 일제(日帝)는 끝내 우리의 정당(正當)하고도 합법적(合法的)인 철고요구(撤去要求)를 받아 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어쨌든 우정총국(郵征總局)은 개설(開設) 17일만에 그 축하연(祝賀宴)을 전동(典洞)(현견지동(現堅志洞)) 소재(所在)의 행사내(行舍內)에서 가져야 하였고 이를 계기로 한 갑신정변(甲申政變)의 실패(失敗)로 말미암아 同月 21일에는 혁파(革罷)되었으며 인천분국(分局)도 同年 12월 1일 까지는 완전(完全) 폐쇄(閉鎖)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일본(日本)과 제휴(提携)한 김옥균(金玉均) 홍영식(洪英植) 박영맹(朴永孟)등 신진정객(新進政客)들이 오직 수구(守舊)와 사대정책(事大政策)으로만 기울어 가던 민씨척족정권(閔氏戚族政權)을 전복(顛覆)하려고 갑신정변(甲申政變)을 이르기게 된 사정(事情)과 그 쿠데다가 어쨌든 이로 말미암아 同月 19일 창덕궁(昌德宮) 뒷산너머 북묘근처(北廟近處)의 옥류천상류(玉流川上流)에서 박영효(朴泳效)와 더불어 왕(王)을 호위하던중 30歳の 젊은 나이로 청병(淸兵)의 손에 일생(一生)일 마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우체사업(郵遞事業) 창시(創始)에 있어서 이와같은 비극(悲劇)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체사업(郵遞事業)이 갑신정변(甲申政變)의 주동인물(主動人物)인 홍영식(洪英植) 등에 의하여 추진(推進)되었고 조국의 개화(開化)라는 큰 포부(抱負)를 실현(實現)하기 위한 시책(時策)의 일환이었던 만큼 그들의 정치생명(政治生命)과 운명(運命)을 같이 하였음은 피(避)할수 없는 숙명적인연

(宿命的因緣) 이었다고 해야할 것이다.

비록 20일 안팎에 그친 짧은 其間이었지만 동년 9월 11일에 재가(裁可)된 우정규칙이하(郵征規則以下)의 각종 규정(規程)을 통하여 대충 살펴보기로 한다.

대한조선우정총국직제장정책(大韓朝鮮郵征總局職制章程責) 직제상(職制上) 우정총국(郵征總局)에는 우정사무(郵征寺務) 일체(一切)를 총리전재(總理專裁)하는 총판(總辦)과 그차위(次位)로 총판유고시(總辦有故時)에 이를 代行하는 幫(방)판(辦) 그리고各科(各課의) 사무(事務)를 총리(總理)하는 과장(課長) 및 과중(課中)의 사무(事務)를 수행(遂行)하는 과원(課員)이 있었다. 그 정원수(庭園樹)는 총판(總辦) 1人 방판(幫辦)1人 과장(課長)3人일 터이나 총판(總辦) 홍영식의(洪英植外)는 방판(幫辦과) 과원(課員)으로 임명(任命)된 구체적 인물(人物)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으며 인천분국(仁川分局)의 직제(職制)역시 밝혀 진바 없고 대체로 총국(總局)의 그것을 축소(縮小)한 범위의 것이었다고 생각되나 후고(後考)를 요(要)한다.

대조선국우정국사무장정(大朝鮮國郵征局事務章程) 우정총국(郵征總局)은 모든 역전(驛傳) 및 우송(郵送)에 관한 일절사무(一切事務)를 총괄(總括)하는 아문(衙門)으로 그 사무분장(事務分掌)은

규획과(規畫課)—직무부(職務部) 노선부(線路部) 지지부(地誌部) 설명부(說明部)  
 발착과(發着課)—점사부(點查部) 압인부(押印部) 구분부(區分部) 담기부(膽記部)  
 집분부(集分部) 시한부(時限附) 우초매하부(郵鈔賣下部)  
 계산과(計算課)—우부출납(郵鈔出納部) 검사감정박부(檢査勘定簿部) 전화(錢貨)  
 출납부(出納部) 기계부(器械部))

로 나누어 즉 3課 15部로 나누어 집행(執行) 하였다.

조선우정규칙(大朝鮮郵征規則) : 우정총국은 全 7章46조(條)로 구성(構成)되어 있다. 제1장은 내국우정세(內國郵征稅), 第2章은 면세우정(免稅郵征) 즉 요금면제체물(料金免除滯物), 第3章은 관보(官報) 및 서적류(書籍類) 第4章은 담기우정(膽記郵征), 第5章은 우정초표(郵征鈔標) 즉 우표(郵票), 第6章은 잡칙(雜則), 第7章은 외국우정(外國郵征) 즉 국제우편(國際郵便)에 관한 것을 각각 규정(規定)하였다.

경성내우정왕복개설규범(京城市內郵征往復開設規法)·경성시내(京城市內)의 집언(集言) 분전(分傳) 및 우초매하소(郵鈔賣下部)등을 규정(規定)하였는데 5항(項)을 되어 있다. 당시의 집분시간(集分時間)은

집신(集信)—개함(開函) 午前 7시~8시 귀국(歸局)  
 午前8時10분까지  
 " 午後5時~오전5時半 귀국(歸局)  
 午後5時 40분까지  
 분전(分傳)—분전(分傳) 午前 8時半~9時半 歸局  
 午前 7時 15分까지  
 " 午後 6時~ 7時 歸局  
 午後 7時 15分까지

였고 우초매하소(郵鈔賣下部) 10所의 위치(位置)와 집신부(集信夫)의 담당구역(擔當區域)은 하기(下記)와 같았는데 매하소(賣下所)에는 반드시 우정봉함(郵征封函)을 設置하였다. 종로십자각(鐘路十字角)(모퉁이) 삼간정동로변(三間井洞路邊)(길가) 돈의문(敦義門)(서대문) 문내(門內)(문안) 以上담당(擔當) 1인 수표교로변(水標橋路邊) 이현(泥峴)(진고개) 로변(路邊) 남대문(南大門) 문내(門內) 이상(以上)담당(擔當)1인 그리고 분전인(分傳人)은 성내(城內) 5部 즉 동서남북(東西南北) 중의 각부(各部)에 1人씩 배정(配定)하였다.

경성인천간왕복우정규법(京城仁川間往復郵征規法) : 경성(京城) 인천간(仁川間)의 체송(遞送)을 규정(規定)한 법으로 4項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법(法)에 의하면 매일(每日) 오전(午前) 9時에 경성(京城)과 인천(仁川)의 양무체사(兩郵遞司)에서 각각 우체운(郵遞運) 1人을 출발(出發)시켜 각(各)40里 떨어진 신장기(新場基)에서 만나 우체낭(郵遞囊)을 상호교환(相互交換)하고 돌아오게 한다. 주행(走行)은 매시간(每時間) 10里이고 우체낭(郵遞囊) 왕복(往復)에 8시간(時間) 20分을 소요(所要)하며 각기 하오(下午) 5時 20分에 귀국(歸局)하는데 인천분국(仁川分局)에서는 귀국직시(歸局直時) 경성(京城)에서는 오후(午後) 6時的 분전시간(分傳時間)을 기다려 분전(分傳)하였다. 인천(仁川)에는 우정분국(郵征分局)외는 우초매화소(郵鈔賣下部), 따라서 우정괘함(郵征掛函)의 설치(設置)가 없었으므로 집신(集信)의 필요(必要)를 기다려 즉 매일(每日) 하오(下午) 5時 30분경(分境)에 1차(次) 행하고 외국행우체물(外國行郵遞物)은 그때그때의 선편(船便)에 맞추어 분전(分傳)하면 족(足)하였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끝으로 우정총국사(郵征總局舍)에 대하여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이 청사(廳舍)는 갑신정변(甲申政變)으로 인해 우정국(郵征局)이 폐지(廢止)되자 그후(後) 한어학교(漢語學校) 사립중등학교(私立中東學校)로 쓰인 일이 있으며 한 때(1904年) 애국단체(愛國團體)인 보안회(保安會)가 이곳을 본거(本據)로 항일운동(抗日運動)을 전개(展開)한바도 있다. 이런 일로 한어학교(漢語學校)는 폐쇄(閉鎖)되고 일정시(日政時)는 일본인(日本人)이 살다가 해방(解放)이 되자 귀속재산(歸屬財産)으로 처리(處理)되어 민간(民間)에 결하(拂下)되었다. 그동안 고균기념회(古筠記念會) 민충정공사업(閔忠正公事業會)에서 이 건물(建物)을 구득(購得)할 뜻이 있었다고는 하나 성사(成事)치 못하고 1956年 가을 동대문의 보수(補修)에이 건물(建物)의 고와(古瓦)를 전용(轉用)하기 위(爲)하여 이 유서(由緒)깊은 건물(建物)의 도양(倒壤)하게 되었고 70.10.30 이 청사(廳舍)를 사적(史蹟)으로 지정(指定)하여 체신부(遞信部)가 소장(所藏)하고 있는 우정창설기(郵征創設期)의 사료(史料)를 보관전시(保管展示)하는 체신기념관(遞信記念館)으로 활용(活用)하게 된 것이다.

註 1. 善道新郵政

2. 陣鎰洪考定本(大朝鮮國郵政規則附各種法規)